

특정감사

#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본부 등 □□□지사 공금사용 -

2014. 11.

 감 사 실  
대한지적공사

# 목 차

I. 감사 개요 . . . . .	1
II. 감사 대상 현황 . . . . .	2
III. 감사 결과 . . . . .	3
IV. 감사 종합 의견 . . . . .	6
V. 감사 처분 . . . . .	10

**[붙임] 처분지시서 각 1부**

# I

## 감사 개요

### □ 감사배경

- □□□□□본부 □□□지사 기술직 5급 □□□(서무담당자)이 측량수수료를 정상적인 측량수수료 계좌를 이용하여 측량의뢰기관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나, 지사에서 일상적인 자금(전도자금)을 취급하는 기타계좌를 이용하여 공금(특수업무 측량수수료)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특정감사 실시

### □ 감사 목적

- 이번 감사는 □□□□□본부와 □□□지사에 대하여 측량수수료 횡령 및 유용 내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

### □ 감사 범위

- 이번 감사는 2013. 1. 1.부터 감사일현재까지 □□□남도본부와 여수시지사에서 실시한 본부 통제 활동 및 지사 지적측량업무를 대상으로 본부·지사 기타계좌 관리현황 및 규정준수 여부 점검 등을 감사 범위로 설정

### □ 감사기간 및 인원

- 2014. 10. 27. 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15일간 감사실 3명, 감사분소 2명 총 5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65명)을 □□□□□□□본부와 □□□□□지사에 투입하여 감사 실시

## □ 감사방법과 절차

- □□□지사 기타계좌로 입금된 측량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공사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 본부와 지사의 내부통제 기능과 통계자료 관리 현황을 확인함.

## Ⅱ 감사 대상 현황

### □ 측량수수료 수입계좌 및 지출계좌 현황

- □□□지사 측량수수료 수입계좌 및 전도자금 운영계좌 현황
  - 제1청사 수수료계좌: 농협 614-01-020877(1993. 8. 19. 개설)
  - 제2청사 수수료계좌: 농협 656-01-003328(1998. 6. 30. 개설)
  - 전도자금 지출계좌: 농협 614-17-000085(1999. 5. 21. 개설)

#### < 업무규정 >

제8조 (지적측량수수료수입계좌설치) ① 본부장은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입하는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수수료 수입계좌를 시·군·구별로 1개만 개설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2개 이상의 수수료수입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계사무 처리규칙>

제37조 (지출계좌설치) 회계책임자와 현금취급원은 제33조에 따른 수입계좌 설치 은행에 지출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출계좌는 수입계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취급원의 경우에는 예금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 □ 공사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준수 여부 확인사항

- 「업무규정시행규칙」에 따른 측량업무 보고 및 확인 절차
- 「업무규정시행규칙」 및 「미수수료 관리 지침」에 따른 미수수료 점검·확인 및 미수수료 관리대장 기록·관리
- 「문서규정시행규칙」에 따른 지사 인장 관리
- 「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지출결의서 정리 및 지출에 따른 영수증서 첨부 의 적정성

## Ⅲ 감사결과

### □ 감사초점

- 지적측량업무가 정산 완료된 수량과 수수료가 청구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 및 전도자금 계좌에 수입된 내용이 적정한지와 측량수수료 인출 후 개인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이를 위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정산 방법의 적정성과 지사 운영계좌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감사초점으로 설정하였음.

### □ 관련규정

- 「복무규정」에 따른 내부직원의 성실의 의무
-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점검결과

## 가. 공금사용에 관한 사항

< 표 1. □□□지사 기타계좌에 입금된 공금사용 현황 >

구분	기타계좌 공금사용 현황(원)			비고
	계	개인사용	수수료 납부	
2013년	421,665,200	318,069,400	103,595,800	27건
2014년	130,399,500	129,795,600	603,900	59건
계	552,064,700	447,865,000	104,199,700	총 86건

※ 기타계좌에서 수수료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금액(2건) 제외

- □□□지사 기술직 5급 □□□은 1997. 9. 1.에 입사한 후, □□□□ □□본부 □□□지사에서 2013. 3. 4.부터 현재까지 지사 서무담당자로서 지적측량수수료 청구 등의 행정업무 및 결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자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지사 기술직 5급 □□□은 지적측량수수료 청구 및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회로 현장 측량업무가 완료 및 정산된 업무를 정상적인 측량업무 수수료계좌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사장 결재를 득한 후 청구서를 업무지원시스템(COS)에서 한글로 다운로드 받아 청구서를 전도자금 계좌(이하 “기타계좌”라 함.)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측량의뢰 기관에 청구서를 송부하였다.
- 이러한 방법으로 86건 552,064,700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기타계좌로 입금 받아 이중 104,199,700원은 기 인출하여 사용한 측량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입금자를 해당기관 명의로 측량수수료를 입금하여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나머지 측량수수료 447,865,000원은 개인의 부채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지사 회계 및 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 447,865,000원의 측량수수료를 개인의 부채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횡령한 447,865,000원은 2014. 11. 1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

## 나. 미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수수료 관리 지침」 제4조 (리스크의 종류와 관리주체)에 따르면 미수수료에 대한 리스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 하며, 각 단계에 대한 조치사항 및 관리주체는 다음 표와 같다.

단계	관리주체	조치사항
관심(Blue)	지사	전화독촉 등 일상적 회수노력
주의(Yellow)	지사	문서발송, 방문 등 회수독촉 공식화
경계(Orange)	지사, 본부 및 본사	대물변제, 채권확보
심각(Red)	지사, 본부 및 본사	소송 및 상각

- 그런데도 지사에서 수립해 놓은 수입대책과 달리 서무담당자(□□□) 본인이 혼자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내부구성원이 미수수료 수입을 위한 독촉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미수수료 관리 지침」에서 정한 문서발송, 방문 등 회수독촉 공식화 조치사항을 미실시하였다.

「미수수료 관리지침」 및 지사 미수수료 수입대책에 따라 적정하게 미수수료를 관리하여야 하나, 규정 및 수입대책과 달리 문서 발송 및 방문 등의 적절한 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 다.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

- 지사 회계 및 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 552,064,700원의 공

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규정에 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성실의무(공금 횡령·유용)를 위반한 것으로 「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 제22조(고발 기준) 및 「인사규정」제45조(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고발 / 파면” 조치

## IV 감사 종합의견

### □ □□□의 고발에 관한 사항

- □□□지사 기술직 5급 □□□(이하 “관련자”라 한다.)은 1997. 9. 1.에 입사한 후, 2013. 3. 4.부터 현재까지 □□□□□□본부 □□□지사 서무담당자로서 지적측량수수료 청구·수입에 대한 행정업무와 결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자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지적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 제22조(고발 기준)에 따르면

사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판단하면서 범죄혐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되, 특히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 “200만 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 횡령, 3,000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부 □□□지사에서는 특수업무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그 사업의 대금으로 86건 금552,064,700원을 기타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
- 관련자는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청구서에 기재된 수수료계좌를 기타계좌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3. 4. 16.부터 2014. 9. 5.까지 기타계좌에 입금된 금552,064,700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사장 몰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이중 금104,199,700원(유용)은 기 인출하여 사용한 측량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입금자를 해당기관 명의로 측량수수료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나머지 측량수수료 금 447,865,000원(횡령)은 개인의 부채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사실이 발각되자 2014. 11. 13.일까지 본인이 사용한 공금 금 447,865,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 지사 회계 및 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위조나 인장 도용 등의 방법으로 금552,064,70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규정에 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이며 성실의무(공금횡령·유용)를 위반한 것으로 「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 제22조(고발 기준)에 해당된다.

## □ □□□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지사 기술직 5급 □□□(이하 “관련자”라 한다.)은 1997. 9. 1.에 입사한 후, 2013. 3. 4.부터 현재까지 □□□□□□본부 □□□지사 서무담당자로서 지적측량수수료 청구·수입에 대한 행정업무와 결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자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지적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 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 규정」제45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원이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의, 임의처리, 태만, 부주의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관련자는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청구서에 기재된 수수료계좌를 기타계좌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3. 4. 16.부터 2014. 9. 5.까지 기타계좌로 입금된 금552,064,700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사장 몰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이중 금104,199,700원(유용)은 기 인출하여 사용한 측량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입금자를 해당기관 명의로 측량수수료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나머지 측량수수료 금447,865,000원(횡령)은 개인의 부채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하였다. 위 사실이 발각되자 2014. 11. 13.일까지 본인이 사용한 공금 금447,865,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 「미수수료 관리 지침」 제4조 (리스크의 종류와 관리주체)에 따르면 미수수료에 대한 리스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 하며, 각 단계에 대한 조치사항 및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도 「미수수료 관리 지침」 및 지사에서 수립해 놓은 수입대책과 달리 관련자 본인이 혼자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내부구성원들이 미수수료 수입을 위한 독촉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미수수료 관리 지침」에서 정한 문서발송, 방문 등 회수독촉 공식화 조치사항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지사 회계 및 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552,064,70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 및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줄이기 위한 지적측량 업무 재정산 그리고 현금취급인장 임의 도용 등은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규정에 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성실의무(공금횡령·유용)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제45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IV 감사 처분

- 특정감사 처분지시서 각 1부. 끝.

# 처분요구서

감 사

고 발 요 구

제 목 공금사용(횡령·유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관 련 자 기술직 5급 □□□

처 분 종 류 고 발

내 용

□□□지사 기술직 5급 □□□(이하 “관련자”라 한다.)은 1997. 9. 1.에 입사한 후, 2013. 3. 4.부터 현재까지 □□□□□□본부 □□□지사 서무담당자로서 지적측량수수료 청구·수입에 대한 행정업무와 결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자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지적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 제22조(고발 기준)에 따르면 사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판단하면서 범죄 혐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되, 특히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

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 “200만 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 횡령, 3,000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지사에서는 특수업무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그 사업의 대금으로 86건에 금552,064,700원을 기타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

관련자는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청구서에 기재된 수수료계좌를 기타계좌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3. 4. 16.부터 2014. 9. 5.까지 기타계좌에 입금된 금 552,064,700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사장 몰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이중 금104,199,700원(유용)은 기 인출하여 사용한 측량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입금자를 해당기관 명의로 측량수수료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나머지 측량수수료 금447,865,000원(횡령)은 개인의 부채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사실이 발각되자 2014. 11. 13.일까지 본인이 사용한 공금 금447,865,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지사 회계 및 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위조나 인장 도용 등의 방법으로 금552,064,70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규정에 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이며 성실의무(공금횡령·유용)를 위반한 것으로 「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 제22조(고발 기준)에 해당된다.

## 조치할 사항

사장은 「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 제22조(고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감 사

징 계 요 구

제 목 공금사용(횡령·유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관 련 자 기술직 5급 □□□

처 분 종 류 파 면

내 용

□□□지사 기술직 5급 □□□(이하 “관련자”라 한다.)은 1997. 9. 1.에 입사한 후, 2013. 3. 4.부터 현재까지 □□□□□□본부 □□□지사 서무담당자로서 지적측량수수료 청구·수입에 대한 행정업무와 결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자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지적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규정」제45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원이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의, 임의처리, 태만, 부주

의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는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청구서에 기재된 수수료계좌를 기타계좌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3. 4. 16.부터 2014. 9. 5.까지 기타계좌로 입금된 금552,064,700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사장 몰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이중 금104,199,700원(유용)은 기 인출하여 사용한 측량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입금자를 해당기관 명의로 측량수수료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나머지 측량수수료 금447,865,000원(횡령)은 개인의 부채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사실이 발각되자 2014. 11. 13. 일까지 본인이 사용한公款 금447,865,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미수수료 관리 지침」 제4조 (리스크의 종류와 관리주체)에 따르면 미수수료에 대한 리스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 하며, 각 단계에 대한 조치사항 및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수수료 관리 지침」 및 지사에서 수립해 놓은 수입대책과 달리 관련자 본인이 혼자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내부구성원들이 미수수료 수입을 위한 독촉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미수수료 관리 지침」에서 정한 문서발송, 방문 등 회수독촉 공식화 조치사항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지사 회계 및 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552,064,70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 등은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규정에 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성실의무(공금횡령·유용)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제45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조치할 사항

**사장은** 성실의무(공금횡령·유용)를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인사규정」제45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